

의안번호	제390호
의결 연월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9일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발의자 : 최정훈, 노금식, 김성대,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실태조사, 홍보,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 나. 관련부서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

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④(중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2.10. 조례 제4506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의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 3.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단가산출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

※ 본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현재('23.7.24.) 청년 예술인(단체) 대상 지원사업으로 산출함.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90,000천원)
  - 청년예술가 지원금 : 16명 \* 5,000천원 = 80,000천원
  - 회의비 : 80명 \* 25천원 = 2,000천원
  - 행사운영비(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 8,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80,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금 : 12개단체 \* 6,660천원 ≒ 8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청년예술단체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